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백 상 기	답변부서	건설국 건설과
질문제목	폐천부지를 매각하기전 면장이나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		

□ 질문요지

광탄면에서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하는 폐천부지(창만리 566-51)가 협소하여 인근 폐천부지(창만리 566-1)까지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는데 면장이나 의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 임의로 매각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 2002. 12. 20. 점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제출
- 2003. 1. 8.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승인(행정2 건설58170-590)

계		매각재산		대부재산		기타재산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m ²		m ²		m ²		m ²
227	107,575	41	44,855	132	37,965	54	145,073

○ 2003 도유폐천부지 매각현황

계		금촌동		교하읍		광탄면		적성면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m ²		m ²		m ²		m ²		m ²
9	9,597	3	1,085	1	309	6	7,741	2	462

※ 운동장부지 인근 토지(창만리 566-1, 방축리 386-8) : 2003. 5. 14

- 점유자(최행남)와 매매계약

-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도유폐천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면서 읍면장의 의견을 확인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광탄면으로부터 체육시설용지(운동장) 확장에 대한 공문이나 구두로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간 유사한 문제점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각 읍면장 및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매각절차를 이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작성자 건설과장 우 범 찬

